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 범위·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열람 범위, 대리인 등 지정절차 등에 입법미비가 있어 보완 필요

3.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한 직원 업무절차 명확화(안 제10조제4항)

- 1)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기록물 검색 및 목록 등을 열람·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 명확화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3제3항)

-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
-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방문열람을 제한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 대한 사본·복제물 제공방안 구체화(안 제10조의5제2항)

-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
-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제공을 제한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를 명확화(안 제10조의6)

- 1)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지정 요청서에 열람 목적 및 내용, 대리인 등의 지정기간 포함 규정
- 2)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가족의 순위 선정
- 3) 대리인 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
- 4) 열람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철회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마.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을 명확화(안 제10조의7)

- 1)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시 열람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

2) 대리인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인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예정(3. 7. ~ 3. 17.)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4호 중 “업무”를 “업무(열람을 위한 목록의 검색 및 제공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을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열람범위에서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비공개 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5의 제목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사본·복제물 제공 범위에서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비밀기록물”을 “비밀기록물(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비공개 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6제1항 중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7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을”을 “등을”로, “대리인등 지정”을 “지정”으로, “제출”을 “서면으로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지정 요청서에는 열람목적 및 내용, 대리인 지정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의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15일 이내에”를 “90일 이내에 검토 및”으로, “대리인등을”을 “대리인 등을”로, “전직 대통령의”를 “추천한”으로, “대리인등에게”를 “대리인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되 협의가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

때 순으로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열람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대리인 등을 추천한 가족의 추천 철회
2.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중에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대리인 등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대리인 등이 법령 위반 행위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리인등”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할 수 있다”를 “열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직 대통령 전기(傳記)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부득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본·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략)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④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4. ----- ----- ----- ----- ----- 업무(열람을 위한 목록의 검색 및 제공업무를 포함한다)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생략)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② ----- ----- -----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③ · ④ (생략)

제10조의5(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①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

----- 경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열람범위에서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는 -----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 기록물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의5(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① -----

----- 경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사본 · 복제물 제공 범위에서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는 -----

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상대방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방법, 제공 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

--.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 기록물 사본·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

----- 비밀기록물(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은 제외한다)-----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
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리
인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
람(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7에
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추
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
의 장이 정하는 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
설>

<신 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대리인등 지정 요청서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절차) ① -----

-- 등을 -----

----- 지정 -----

-- 서면으로 제출-----
----- . 이 경우 제
출하는 지정 요청서에는 열람목
적 및 내용, 대리인 지정기간 등
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되 협의가 곤
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
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
으로 한다.

③ -----

----- 90일 이내에 검토 및 ---

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 대리인 등을 -----
----- 추천한 -----
----- 대리인 등에게 -----
-----.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열람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대리인 등을 추천한 가족의 추천 철회
2.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중에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대리인 등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대리인 등이 법령 위반 행위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

대통령 재임 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 등에 관한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서 긴급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신 설>

----- 대통령기
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 . ----- 대
통령지정기록물-----
----- 열람할 수 있다.

1.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
인정보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
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
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직 대통령 전기(傳記) 출판
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을 청
구한 경우로서 해당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부
득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u>예외적으로 사본·복제물을 제 공할 수 있다.</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	
연 락 처	(044) 211 - 2216